

## 머 리 말

#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白 樂 昇

(大韓酒類工業協會·會長)

지난 酒類工業誌 (88年 6月)에는 先進諸國의 酒類管理政策과 販賣免許制度에 對해 紹介한 바 있었다.

原本은 日本의 酒類行政制度研究會에서 發行한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Alcoholic Beverage Contro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이며 本書는 第5章 및 參考 4 그리고 條文索引으로 構成되어 있고 지난 번 酒類工業誌에 直譯揭載된 부분은 參考 1, 參考 2의 末尾의 內容이었다.

이번에는 第一章에서 第三章까지의 머리부분을 直譯紹介함으로서 美國의 聯邦法과 特定州法 概觀할 수 있는 資料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昨今 經濟的 自律化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實狀況속에서 本書가 世界主要先進國의 酒類生産 및 販賣制度, 그리고 強한 政府의 統制體系뿐만 아니라 致醉性 嗜好飲料라고 하는 酒類의 持性を 충분히 고려한 國民福祉의 側面, 消費者保護의 側面等 發展指向의 酒類管理制度의 內容이 仔細하게 記錄되어 있어 時機的으로 우리 業界가 이를 읽고 우리의 現實과 比較해 보는 것이 대단히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서 여기에 머리부분을 紹介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酒類에 關한限 免許나 專賣制度를 採擇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고 多分히 社會的 問題의 中心의인 것으로 把握하고 對處해 나가고 있는 事實을 볼 때 우리 나라의 酒類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는 絶對性 急한 改革이나 免許의 開放 등으로 지난날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酒類生産 및 去來의 亂脈相을 되풀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責任있는 분들이 우리의 오늘날 酒類産業의

### 目 次

#### 머 리 말

- I. America合衆國의 酒類管理制度
  - 1. 合衆國에 있어서의 酒類管理制度 概要
  - 2. 合衆國에 있어서의 酒類小販賣制度
  - 3. 合衆國 憲法修訂 第21條
  - 4. 聯邦酒類 行政法
  - 5. 聯邦酒類 行政法의 概要
  - 6. 캘리포니아州 憲法 第20條, 22項 및 酒類管理法
- II. 合衆國 憲法修訂 第21條
  - 修訂 第18條의 廢止 -
- III. 聯邦酒類 行政法
  - 聯邦法典 第27卷 第8章 -

現住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서 政府의 政策과 社會의 認識이 適切히 調和되고 이를 根幹으로 하여 漸進的인 發展的 改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끝으로 本書를 購入하여 우리에게 無料로 提供해준 SOFECIA側에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 I. America 合衆國의 酒類管理制度

### 1. 合衆國에 있어서의 酒類管理制度의 概要

美合衆國은 聯邦制 國家이기 때문에 酒類行政制度도 複雜하다.

美合衆國에 있어서는 聯邦政府, 州政府 및 地方政府의 各級 政府 共히 酒類의 社會的 管理에 關與하고 그 形態도 各州, 各市, 郡等에 있어 相異하다. 그 概要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 聯邦政府

聯邦政府의 酒類行政은 財務省 알콜, 담배, 火器局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이 掌握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주로 酒類製造業者, 輸入業者 및 都賣業者에 대해 免許를 發行하고 酒類의 包裝, 라벨표시 및 廣告活動에 關해 規制를 行하고 있다. 나아가 酒類製品의 安全性에 關해서는 保健, 教育 福祉省의 食品, 藥事廳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

#### ● 州政府

州政府는 주로 酒類의 販賣 및 流通의 規制를 行하고 있으며 여기에 關하여 法定 飲酒年令 酒類販賣店의 種類 및 場數制限, 廣告規制, 販賣日 및 販賣時間 等에 關한 酒類行政을 行하고 있다.

#### ● 地方政府

酒類行政의 분야에 있어서의 地方政府의 關與의 形態는 各州마다 크게 다르다.

地方政府는 39個州에서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느냐 또는 禁止시키느냐 하는 選擇權이 주어저 있다. 이 選擇權은 Local option 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지만 郡市 또는 邑面單位에서 行使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층의 地方政府에게 Local option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對하여는 이를 認定하는 州마다에 따라서 다르다.

### 2. 合衆國에 있어서의 酒類小賣 販賣制度

美合衆國의 酒類販賣制度는 各州에 따라 相異하며 各州가 採擇하고 있는 酒類販賣制度는 專賣制와 免許制의 2種類로 區分된다.

酒類販賣制度로서 專賣制를 採擇하고 있는 州는 18個州이며 免許制를 採擇하고 있는 州는 33個州이다.

#### ● 專賣制

專賣制를 採擇하고 있는 州에 있어서는 州政府가 經營하는 酒販店만이 모든 酒類 또는 一部の 酒類販賣를 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但, 그 形態는 酒類 또는 알콜度數에 따라 相異하다. 나아가 專賣制의 州로 通常 分類되는 미시시피州 및 와이오밍州에서는 蒸溜酒 및 와인의 都賣만을 專賣制로 하고 있으며 이들 兩州에 있어서의 酒類의 小賣販賣는 免許酒販店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酒類中에서도 蒸溜酒에 對한 規制는 一般的으로 엄격하며 蒸溜酒는 專賣制를 採擇하는 18個州中 미시시피州 및 와이오밍州를 除外한 16個州의 州政府 販賣店에서 販賣되고 있다.

麥酒에 대한 規制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며 實質的으로는 유타州만이 專賣制를 採擇하

고 있다.

(但, 기타의 5個州에 있어서도 一定濃度以上の麥酒는 專賣制의 對象이 되고 있다.)

와인에 관해서는 專賣制를 採擇하고 있는 18個州中 10個州에 있어서 免許 販賣店이 와인販賣를 하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 ● 免 許 制

免許制를 採擇하는 州에서는 酒類는 全적으로 州政府 등으로부터 免許를 받은 酒販店에서 販賣된다.(專賣制를 採擇하고 있는 州에 있어서도 麥酒 또는 와인等 專賣의 對象이 아닌 酒類는 免許酒販店에서 販賣된다). 美合衆國에 있어서의 酒類小賣販賣免許는 店外消費 酒類販賣免許와 店內 消費酒類販賣免許로 크게 구분된다.

#### 〈1〉 店外 消費酒類 販賣免許

店外 消費 酒類販賣免許란 家庭消費用等 酒類의 販賣場 또는 販賣施設外에 있어서의 消費를 爲한 酒類의 販賣를 行하는 것을 認定하는 免許로서 日本의 酒類小賣販賣免許에 해당 하는 것이다.

店外 消費 酒類販賣免許는 販賣할 수 있는 酒類의 種類에 따라 더욱 細分化되어 있다. 店外 消費 酒類販賣免許는 酒類販賣專門店, Drug Store (藥品을 中心으로 하는 小賣店) 및 食料品店을 主對象으로 發行하고 있다. Drug Store 및 食料品店에 대해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를 發行하는 州가 가장 많고 35個州中 13個州로 되어 있다.

또한 酒類 販賣專門店에만 免許를 發行하고 있는 州도 많으며 알라스카州, 후로리다州, 等 9個州가 이러한 州에 속한다.

매리랜드州에서는 Drug Store 및 食料品店에 對해 免許를 發行하고 있지만 연쇄점이나

割引販賣場인 食料品店에는 免許를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란 酒類를 販賣하는 販賣場 또는 施設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한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는 免許이다. 이러한 酒類小賣販賣免許는 日本에서는 發行되지 않고 있으며 飲食店은 酒類免許를 받지않고 酒類의 提供을 行할 수 있다. 이러한 日本의 制度는 世界的으로 例外的인 것으로서 飲食店에 있어서 酒類販賣의 免許를 받지않고 酒類를 提供할 수 있는 것은 日本과 폴투갈 2個國 뿐이다.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는 原則적으로 레스토랑 호텔 또는 公認클럽에 對해서 發行되고 있지만 파브, 바아 等에 對하여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를 認定하고 있는 州는 적으며 35個州中 10個州 뿐이다.

또한 酒類管理에 엄격한 캔사스州 및 오크 라호마州에서는 店內 消費酒類 販賣免許의 發行을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콜로라도州에서는 食事に 부수하여 酒類의 提供을 行하는 것만을 認定하고 있다.

### 3. 合衆國憲法修訂 第21條

美合衆國憲法上 各州의 政府에는 酒類管理에 관하여 폭넓은 管理權이 주어져 있다.

合衆國憲法上 酒類管理에 關하여 直接 規制를 行하고 있는 것은 合衆國憲法修訂 第21條이다. 이 修訂第21條는 美國 全域에 禁酒時代를 招來케한 合衆國憲法修訂第18條를 廢止하는 規定이지만 이와 同時에 州政府에 對해 酒類管理에 관하여 폭넓은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修訂 第21條에서는 州法에 違反하여 當該州內에서 販賣(引渡) 또는 使用할 目的으로 當該州內에 酒類를 輸送 또는 輸入하는 것이 禁

止되어 있다.

各州는 修訂第21條에 따라 州内に 있어서의 酒類取扱을 規制하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本條에 따라 州獨自의으로 禁酒政策을 採擇하는 것도 가능하다.

修訂 第21條는 各州 政府가 州内に 있어서의 酒類取扱을 規制하는 權限을 부여한 것이지만 合衆國憲法上의 聯邦政府의 權限을 뒷받침하는 州際通商條項(ART. I. § 8 cl. 3) 輸出入條項(ART. I. § 10 cl. 2) 등을 廢止하는 것은 아니라고 解釋되고 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의 기간이 美國에 있어서의 禁酒法時代이다. 그 根據가 된 憲法修訂 第18條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本條의 批准日부터 1年後에 있어 合衆國 및 그의 管轄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飲用을 목적으로 하는 酒類의 製造, 販賣 또는 輸送, 이들 地域에의 酒類의 輸入 혹은 이들 地域으로부터의 酒類의 輸出을 禁止한다.」

#### 4. 聯邦酒類行政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聯邦政府에 의한 酒類行政의 근거가 되는 것은 合衆國 內國歲入法(酒稅法)等 酒稅에 관한 것을 제외한 聯邦酒類行政法(合衆國法典 第27卷 第8章)이다.

本法의 執行은 지난날에는 聯邦酒類 管理廳(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이 掌握하고 있었지만 同廳이 1940년에 廢止된 以來 聯邦財務省이 이를 管掌하고 있다.

\* 合衆國修訂 第21條와의 關連으로 本法의 合憲性에 對하여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本法은 聯邦議會가 聯邦憲法上의 州際 및 國際通商規制權限 및 歲入確保權限을 行使한 것으로서 有効한 것으로 判例上 해석되고 있다.

##### ●立法目的

聯邦議會는 聯邦酒類行政法의 立法에 있어 그 立法目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犯罪와 不正의 集團인 資金力을 가진 Gang이 酒類의 生産 및 流通事業에 參與할 수 있도록 門戶를 개방해서는 안된다. 本法의 執行에 따라 本法 및 기타의 聯邦法 또는 州法의 規定에 違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者를 酒類産業으로부터 반드시 排除시킬 수 있을 것이다」

酒類産業은 酒場에 있어서의 酒類의 提供이라는 事業活動과 連關하여 犯罪者 集團이 不法利益獲得의 場所를 얻기 쉬운 것이지만 聯邦酒類行政法은 製造 및 販賣를 包含하는 酒類産業으로부터 Gang을 排除하는 것을 그 立法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聯邦酒類行政法의 特色

聯邦酒類行政法의 特色의 주된 것을 列擧하면 다음 다섯가지이다.

① 酒類業 免許制度를 酒類行政의 基本으로 하고 있다.

② 酒類産業에 있어서의 公正競争을 維持하기 위해 製造業者 및 都賣業者 등이 小賣業者를 契約, 利益誘導 등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③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 라벨表示 및 廣告內容에 대해 制限을 加하고 있다.

④ 法律上으로는 詳細한 規定을 定하지않고 執行을 위한 規定制定權限을 대폭적으로 財務省에 委任하고 있다.

⑤ 聯邦政府權限의 聯邦憲法上 制約을 반영시켜 制限對象을 酒類의 州際 및 國際取扱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시키고 있다.

(1) 日本의 酒類免許制度는 酒稅法에서 規定되어 酒稅를 保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위치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聯邦酒類行政法에 있어서는 酒類業 免許制度는 酒稅法과는 獨立된 酒類行政法의 基本制度로서 자리하고

있다. 酒類行政의 課題도 酒類免許業者에 對한 義務規定으로서 立法化되어 있으며 酒類의 社會的 管理도 酒類業者에 依한 義務規定의 遵守 및 財務省에 의한 그 監督을 통하여 實現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究極的으로는 GANG 等の 犯罪者集團이 酒類産業에서 不當한 利益을 獲得하는 기회를 排除하는 目的으로 定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聯邦酒類行政法에서는 酒類産業에 있어서의 公正競爭을 유지하기 위하여 製造業者, 都賣業者 等이 他業者의 商品의 排除契約, 利益供與, 商事買收, 委託販賣契約等에 의해 小賣業者를 支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聯邦酒類行政法은 消費者保護의 觀點에서 財務省이 消費者를 기만 내지는 誤解시키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消費者에 對해 일정한 사항에 관해 올바른 情報의 提供을 行할 것을 義務로 하는 規則 等を 制定하는 權限을 財務省에 授與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 規則에 反하여 라벨表示, 廣告 等を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聯邦酒類行政法의 이러한 規定에 基礎하여 財務省 規則에 詳細한 禁止規定 等이 定해져 있다.

(4) 聯邦酒類行政法은 聯邦政府의 聯邦憲法上의 權限을 基本으로 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그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聯邦憲法上, 原則的 酒類管理權은 州政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聯邦酒類行政法上 特定의 行爲를 禁止할 경우에 있어서는,

- ① 當該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서 行해질 경우
- ② 當該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를 實質的으로 制限하거나 阻止하게 되는 경우
- ③ 當該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第三者의 去來行爲를 阻止하거나 制限하

는 경우에 禁止한다는 制限을 하고 있다.

또한 聯邦酒類行政法에 있어서의 免許對象事業을 都賣業까지로 限定시킨 것은 이러한 觀點으로부터의 制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聯邦政府는 小賣業者에 對한 管理의 必要性은 충분히 認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內國歲入法上 酒類의 小賣業者에 對해 酒類事業稅라고 할 수 있는 Occupation Tax를 每年 課稅하고 그 納稅를 表示하는 스탬프를 發行하고 있다. 또한 酒類小賣業者에게는 登錄制가 採用되고 酒類의 仕入에 關한 記帳義務 等이 付設되고 있다.

## 5. 聯邦酒類行政法의 概要

### 가. 酒類業 免許의 對象事業

聯邦酒類行政法上 다음의 酒類事業이 免許事業으로 되고 있으며 聯邦財務省이 發行하는 基本免許(Basic permit)를 받지않고 이들 免許對象事業을 行하는 것, 無免許로 免許對象事業에 從事하는 者가 無免許事業으로 製造 또는 入手한 酒類를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혹은 關係者를 통해 販賣, 販賣의 申入, 販賣에 準하는 引渡, 販賣契約 또는 出荷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1) 蒸溜酒, 와인 또는 麥酒等 麥芽飲料의 合衆國으로의 輸入事業.
- (2) 蒸溜酒 또는 와인의 製造, 釀造, 精溜 또는 브랜드 事業.
- (3) 蒸溜酒의 瓶入 또는 瓶入, 保管事業
- (4) 蒸溜酒, 와인 또는 麥酒等 麥芽飲料의 都賣業.

※酒類小賣業者는 內國歲入法上 酒類事業稅(Occupation Tax)의 納稅者로 되어 酒類事業稅의 納付制를 表示하는 스탬프의 取得登錄 및 酒類去來의 記帳義務가 設定되고 있다. 內國歲入法(第51章 Subchapter A part II §5121.

§ 5124 § 5141 § 5142 및 § 7011 a) 參照).

#### 나. 酒類業 免許의 發行要件

酒類業免許의 資格要件은 다음과 같으며 免許申請書의 內容 및 財務省의 調査에 基礎하여 免許申請者가 資格要件을 갖추지 않았다고 믿기에 足할 理由를 갖는 경우에는 財務省은 그 趣旨를 申請者에 通知하고 聽聞을 거쳐 申請을 拒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申請者(申請者가 株式會社의 경우는 그 任員, 代表理事 또는 主要 株主)가 申請日로부터 5年 以内に 聯邦法 또는 州法에 依한 重罪에 關聯되어 有罪로 되어있지 않을 것.

(2) 申請者(申請者가 株式會社의 경우는 그 任員, 代表理事, 또는 主要 株主)가 申請日로부터 3年 以内に 酒類에 關한 聯邦法(酒稅에 關한 것을 包含)에 根據하여 輕罪에 關聯되어 有罪로 되어있지 않을 것.

(3) 申請者가 그 事業 經歷, 財務狀況 또는 去來關係로 보아 合理的 期間內에 事業을 開始하고 또는 聯邦法에 따라 事業을 行할 可能性이 없다고 判斷되지 않을 경우.

(4) 申請하는 事業이 開業豫定地의 州法에 違背되지 않는 경우(예컨데 州法上 都賣業 등이 專賣制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都賣業免許는 發行되지 않는다).

#### 다. 酒類業免許의 條件

酒類業免許는 聯邦酒類行政諸法令을 遵守할 것을 條件으로 해서 發行되고 있으며 免許者가 이들 法令을 違反하는 경우에는 免許條件 違反으로 免許를 取消당한다. 단, 免許條件을 처음 違反할 경우에는 免許의 停止處分만을 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酒類業免許의 取消, 停止 및 撤回

酒類業免許者가 고의로 免許의 條件에 違反

했음을 認定할 경우에는 財務省은 聽聞의 通知 및 기회를 준 後에 免許를 取消시키거나 또는 財務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期間, 免許를 停止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단, 免許條件을 처음 違反할 경우에는 免許의 停止가 行해진다). 또한 면허자가 2년이상 休업할 경우는 免許는 取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免許가 詐欺, 虛偽事實에 依한 申請, 또는 主要事實을 隱蔽하고 취득된 경우에는 免許는 撤回된다.

#### 마. 聯邦酒類行政法上 禁止되고 있는 不公正 競争等

聯邦酒類行政法上 酒類業免許者 등이 州際 및 國際去來에 關連하여 直接 또는 間接的 혹은 關係者를 통하여 다음의 行爲를 하는 것은 禁止되어 있다.

(1) 契約 또는 其他의 方法에 의해 酒類小賣業者는 自社製品만을 購入할 것을 要求하는 行爲

(2) 다음의 手段에 의해 酒類小賣業者는 自社製品을 購入하도록 勸誘하고 第三者 製品을 排除하는 行爲

① 酒類小賣業者의 小賣免許에 對한 權利의 取得

② 酒類小賣業者의 酒類販賣에 關한 不動產 및 動產에 대한 權利의 취득

③ 酒類小賣業者에 대한 不公正한 設備, 備品, 物品 또는 利益의 供與

④ 酒類小賣業者의 宣傳 및 配送費用의 負擔

⑤ 酒類小賣業者의 債務保證

⑥ 酒類小賣業者의 去來代金에 대한 過大한 回收期限의 設定

⑦ 酒類小賣業者의 製品의 一定 割引去來義務의 約定

⑧ 商事上의 贈賄

⑨ 酒類小賣業者 또는 都賣業者의 任員,

代表 또는 代理人에 대한 利益供與 (提案을 包含)

(3) 酒類小賣業者 또는 都賣業者에게 委託販賣契約 等に 依해 酒類를 販賣하는 行爲

(4) 包裝, 商號, 品銘 및 라벨(商標) 그리고 規格 및 容量에 關한 다음의 財務省規則에 違反한 包裝 또는 商標化되어 있는 酒類製品의 販賣 等을 行하는 것.

① 酒類製品의 內容 및 數量에 關하여 消費者를 기만하는 것을 금지하는 規則.

② 酒類製品의 貯藏年數, 製法, 分析內容, 保證事項 및 科學的 또는 無關連의 事項에 對해 消費者를 誤解시킬 可能性이 있는 표현을 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③ 酒類製品의 特性, 品質, 알콜度數, 製造業者, 瓶入業者 또는 輸入業者に 關하여 消費者에게 適切한 情報를 提供할 것을 義務로 하는 規則.

④ 中性알콜을 使用하는 蒸溜酒, 中性알콜 또는 GIN에 關해 使用中性알콜 原料 또는 度數 等에 對해 正確한 情報를 消費者에게 提供할 것을 義務로 하는 規則.

⑤ 라벨에 競爭者의 製品을 誹謗하는 또는 虛偽의 誤解할 可能性이 있는 卑猥한 혹은 低質의 表現을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⑥ 生存하고 있는 著名人士, 또는 現存하는 團體名, 이들 名稱을 模倣한 것. 또는 略號를 商號나 品銘에 使用하여 이들이 製品을 保證, 製造 또는 使用 혹은 이들의 監督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參與에 의해 生産된 것이라고 消費者에게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경우에 當該 使用을 禁止하는 規則.

(5) 財務省이 發行하는 라벨承認書의 付與를 받지않고 酒類를 瓶入하고 瓶入品을 保稅倉庫로부터 빼내는 것.

(6) 廣告에 關하여 財務省에 違反하여 廣告活動을 行하는 것(財務省 規則에 依한 禁止規定事項은 라벨表示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聯邦酒類行政法에서는 上記外에 蒸溜酒製造者等 以外의 者가 1Gallon(4.546ℓ) 以上의 容器에 들은 蒸溜酒를 販賣하는 行爲, 蒸溜酒製造關連會社 等의 兼務任員에 就任하는 것이 禁止되어 있다.

## 6. California州 憲法 第20條22項 및 酒類管理法

California州는 免許制를 採用하고 있는 州의 하나지만 그 중에서도 Pub (선술집) 等に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를 發行하는等 美合衆國에 있어서는 比較的 規制가 嚴하지 않는 州 中의 하나이다.

California州에 있어서의 酒類行政의 根據 令은 California州 憲法 第20條 22項(酒類販賣에 關한 州의 規制 및 California州 酒類管理法(Alcoholic Beverage Contract)이다.

California州 酒類管理法은 California州 事業管理法典(Business and Profession Code)의 第9部 酒類事業(Division 9 Alcoholic Beverage)으로 制定되어 있지만 同法典9部는 酒類管理法으로 呼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alifornia州에 있어서의 酒類行政의 目的 酒類行政法은 다음과 같은 政策宣言 規定을 設定하고 있다.

1. 酒類의 無免許 및 違法의 酒類製造, 販賣 및 處分으로부터 發生하는 害惡을 除去하고 酒類의 使用 및 消費에 對한 抑制的 精神을 強化하기 爲해 (§ 23001) 本法의 主題는 고도로 州 및 州民의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道德上의 福祉 및 安全에 關한 것이다. (§ 23001)

2. 蒸溜酒 販賣免許의 發行件數를 除限하는 것이 公共福祉 및 道德의 觀點으로 要求되

고 있다 (§ 23815).

3. 州內에 있어서 酒類消費의 抑制의 精神과 더불어 法에 대한 敬意 및 遵守의 精神을 育成하고 強化하기 爲하여 酒類의 製造, 販賣 및 流通을 規制하고 管理할 必要가 있다. (§ 24749)

4. 酒類의 販賣 및 消費를 過度하게 刺戟하여 酒類의 秩序있는 販賣 및 流通을 破壞하게 되는 販賣價格競爭을 除去하기 爲하여 酒類 販賣는 일정한 制限 및 規制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 24749).

이러한 規定에서 判斷하면 酒類의 製造 및 販賣를 자유롭게 했을 경우에는

- ① 不良製品의 製造販賣가 行해진다.
- ② 不正한 販賣競爭이 行해진다.
- ③ 不道德한 販賣競爭이 行해진다.
- ④ 惡質의 犯罪者의 不法利益追求의 手段이 된다.
- ⑤ 過大飲酒의 기회를 제공하여 州民의 健康을 나쁘게 함과 同時에 醫療費를 增大시킨다.
- ⑥ 靑少年의 育成上의 障害가 된다.
- ⑦ 飲酒運轉의 기회를 增大시켜 交通事故 增加의 要因이 된다.

등의 社會的 害惡이 發生한다.

이러한 社會的 害惡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해 酒類의 生産及 販賣를 管理한다. 또한 「酒類消費의 抑制를 行하기 爲해 致醉성이 強한 蒸溜酒의 販賣場을 制限하는 것과 동시에 販賣價格競爭을 公正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California州의 酒類行政上의 目的이라고 보여진다.

#### ● California州의 酒類行政機關

California州에서는 酒類行政機關으로서 酒類管理廳(The 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設定되어 있다.

酒類管理廳은 州憲法上 酒類의 製造, 輸入

및 販賣에 關하여 免許를 發行하고 免許料를 徵收하는 權限 및 免許의 申請을 拒絶하고 免許를 取消 또는 停止시키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다. 酒類管理廳長官은 知事의 閣僚로서의地位가 주어져 있으며 知事が 主宰하는 參事會의 一員이며 知事が 州上院의 承認을 얻어 任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California州의 酒類管理制度의 特色

1. 酒類의 製告販賣 및 處分에 관한 거의 모든 行爲가 免許 또는 許可를 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免許의 要件이 「公共의 福祉 또는 道德에 違背되지 않는 경우」로 一般條項에 規定되어 있으며 이와 同時에 免許의 發行等の 處分은 酒類管理廳의 一般條項에 의한 裁量行爲로 되어 있다.

3. 免許에 關한 處分은 공개된 手續下에서 進行되며 一般州民은 免許의 發行에 對하여 異議申立을 할 수 있고 同時에 免許의 取消 또는 停止에 對해 告發을 行할 權利도 認定되고 있다.

또한 免許에 關한 處分에 郡, 市, 檢察官, 警察署長, 保安官, 食品, 藥品檢查局 等 關係機關이 關與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免許의 一部에 對해 發行件數가 制限되어 있고 同時에 免許의 財產權이 認定되어 그 讓渡에 關하여 상세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① California州에 있어서는 酒類의 製造 販賣 및 處分에 관하는 거의 모든 行爲가 免許 또는 許可를 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法으로 정해져 있는 基本的인 免許에 限하여도 42種類의 免許가 設定되어 있다 (§ 23320) 憲法 第20條 22項 第2段 (모든 酒類는 州議會가 정하는 法律에 따라 免許가 주어지는 事業場(施設)에서 購入, 販賣, 提供, 消費 및 기타의 處分이 行해져야 한다.)에서 規定하는 바와 같이 營業活動이든 아니든 關



係없이 酒類에 관한 處分에는 免許의 取得이 義務로 되어 있다.

예컨데 慈善團體 등이 寄付를 받은 酒類를 販賣할 경우 혹은 遺産 등에 包含되는 酒類를 販賣할 경우에 있어서도 免許를 取得해야 한다는 것이 義務로 되어 있다(§24045.2 §24045.3 §24045.4 §24045.6 §24045.7)

더구나 免許者였던 사람이 免許消滅 後에 保有하는 酒類在庫의 處分等 無免許로 行할 수 있는 去來에 대해서는 法律上 制限의 으로 列擧되어 있다(酒類管理法 第2章).

② California州에 있어서의 免許의 發行 및 取消의 要件은 原則으로 免許의 發行 또는 存續이 「公共의 福祉 또는 道德에 違背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一般條項에 의해 規定되고 있다(州憲法 第20條 22項 5段 酒類管理法 §23958 및 §24200).

또한 酒類管理廳의 免許發行 및 取消 등의 處分은 裁量行爲로 되어 있다(州憲法 第20條 22項 5段).

酒類管理廳이 行하는 免許處分은 酒類의 社會管理機關으로서의 酒類管理廳의 專門의 人 公益的 裁量行爲이며 그 判斷이 適法한 事實認定에 根據할 경우에는 裁量權의 濫用에 該當되지 않는 限 取消의 對象은 되지 않는다(§23084, §23085, §23090.2).

③ California州에 있어서의 免許發行 및 取消 등의 處分은 公開된 手續下에서 州民의 關與를 받으면서 進行되며 處分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컨데 店內 消費 酒類販賣免許를 申請하는 者는 開業豫定地에 있어서 開業豫定の 揭示 및 新聞에 의한 公告를 행하는 것을 義務로 하고 있다(§23985, §23986).

또한 酒類管理廳은 申請이 있었을 경우에는 申請이 있었다는 內容의 通知를 開業豫定地의 保安官, 警察署長 및 地區檢査官, 郡

또는 市에 通知해야 하는 것이 義務로 되어 있다. 더구나 누구라도 開業豫定の 揭示가 있었던 날로부터 30日間 以內에 免許를 發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免許發行에 關하여 酒類管理廳에 異議申立을 할 수 있다(§24013).

異議申立이 있었을 경우에는 酒類管理廳에서 聽聞手續이 行해진다(§24300).

免許取消의 경우도 같으며 酒類管理廳의 職權에 依한 取消外에 누구라도 免許의 取消에 關하여 廳에 高발할 수가 있으며 保安官, 警察署長, 郡 또는 市가 高발을 行할 경우는 公聽會를 開催하여 審理하지 않으면 안된다(§24300).

또한 免許의 取消事由가 되는 免許者의 逮捕, 또는 食品管理法 違反의 有罪判決이 있었을 경우에는 關係機關으로부터 그 事實의 通知가 行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廳은 이를 받아서 取消事由의 存否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4202, §24204).

④ California州에 있어서는 酒販免許의 中心의인 것인 店內消費 및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의 發行件數에 대하여 法律上의 制限이 設定되어 있다.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는 郡內 人口의 2,000名에 1場으로 되어 있으며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는 郡內 人口의 2,500名에 1場으로 되어 있다.(§23815, §23816, §23817)

또한 California州에서는 免許自體의 有償讓渡를 認定하고 있으며 條件付讓渡 捺印證書의 作成等 酒類管理法上 免許讓渡手續을 爲한 상세한 규정을 設定하고 있다(第6章 第5節).

## II. 合衆國憲法修訂 第21條

### — 修訂 第18條의 廢止 —

1. 合衆國憲法修訂 第18條를 廢止한다.

2. 合衆國內의 州, 准州 또는 屬領의 法令에 違反하여 이들 地域에 있어서 使用 또는 引渡를 하기 위한 이들 地域에 對한 致醉飲料의 輸送 또는 輸入을 禁止한다.

3. 本條는 本 憲法의 規定에 따라 議會로부터 州에 對해 本條가 發議된 날로부터 7年 以內에 諸州의 憲法會議에 의해 憲法의 修訂條項으로서 批准되지 않는限 그 効力を 發生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合衆國憲法의 本修訂條項은 1933年 12月 5日 發効하였다.

●州內의 麥酒輸入免許權에 대해 5,000달리의 免許料를 課하는 酒類管理法의 規定은 聯邦憲法에 違背되는 것이 아니다. 合衆國憲法修訂 第21條에 根據하여 有効하다.

●合衆國憲法修訂 第21條는 州를 단순히 通過하는 酒類의 輸送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와이向 船積을 위해 購入하여 샌 프란시스코 船積場의 倉庫에 일시적으로 保管되고 있는 酒類에의 課稅는 行해되지 않는다.

●州外의 酒類產品 보다는 California州의 酒類產品을 우대하는 것은 本條에 依해 認定된다.

●合衆國憲法上 州에는 一般 警察權이 주어 있으며 傳統的으로 警察權에 속하는 事項에 관하는 立法에 대해 憲法上 특별히 授權이 必要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修訂 第21條의 폭넓은 規定은 州民의 健康, 福祉 및 道德에 關해 通常의 州警察 權限 以上の 것을 授權하는 것이다.

●州法에 違反하여 州內에 있어서의 引渡 또는 使用을 위한 州內 輸送, 또 輸入을 禁止하는 修訂 第21條는 California州가 去來 制限 契約를 禁止하는 샤-만 反트라스트法의 規定에 反하여 蒸溜酒의 小賣販賣價格을

公約으로 定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

再販價格을 유지하는 것으로 禁酒의 精神을 強化하고 市場秩序條件을 지킨다는 California州의 政策과 샤-만法上의 政策을 比較해볼 경우,

① 샤-만法上의 政策이 酒類價格 維持法에 의해 명백히 否定된다고 判斷될 때.

② 同法의 禁酒의 精神의 強化機能이 疑心스러울 때.

③ 公正去來 諸法에 反하는 명백한 경향이 있을 때.

④ 法的 實現을 위해 다른 有効한 手段이 있을 때는 샤-만法上의 政策이 優先하고 價格維持 規定은 無効가 된다.

### Ⅲ. 聯邦酒類行政法

#### — 聯邦法典 第27卷 第8章 —

#### § 201 名 稱

本章의 名稱은 “聯邦 酒類行政法”으로 한다.

#### § 202 總 則

##### (a) 歲 出

本法에 依한 財務省 長官의 權限 및 義務를 行使 또는 履行하기 위한 豫算은 특히 콜롬비아 特別區 및 그외에 있어서의 人件費 및 廳舍 貸借料의 支拂, 旅費 및 廳費, 定書, 參考文獻, 書籍, 定期刊行物 및 新聞의 購入費, 速記報告, 서비스提供 契約費, 定期文書서비스 申請費用 分析 또는 證據로서 사용하기 위한 샘플購入 費, 그리고 州 및 聯邦合國酒類管理官 會議開 催費用에 使用하는 것으로 한다.

##### (b) 政府機關의 使用

財務省長官은 關連된 省廳의 同意를 得하여 本法에 基礎하는 權限 및 義務를 行使하고 또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他의 省

廳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官吏 및 職員이 自己의 代理人으로서 行爲하는 것을 認定할 수가 있다.

(c) 他의 法律의 適用

聯邦法典 第15卷 第49條 및 第50條의 規定(罰則을 包含)은 本法에 基礎한 財務省長官의 權限 및 義務 그리고 本法에 의거하여 財務省長官이 집행하는 法律 規定의 적용을 받는 자(法人을 包含)에게 적용된다.

(d) 財務省長官에 對한 報告書

財務省長官은 정해진 方式 및 樣式에 따라 本法에 根據한 長官의 權限 및 義務를 行使하고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報告書의 提出을 義務지을 수 있다.

§ 203 無免許의 경우 違法이 되는 事業,  
州機關에의 適用

蒸溜酒, 와인 및 麥芽飲料에 關하는 州際 및 國際去來를 有効하게 規制하기 위하여 聯邦憲法修訂 第21條를 執行하기 위하여 同時에 蒸溜酒, 와인 및 麥芽飲料에 關한 歲入을 확보하고 郵便法을 執行하기 위하여

(a) 財務省長官이 本法에 基礎하여 發行하는 基本免許에 根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음의 事項을 행하는 것을 違法으로 한다.

(1)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合衆國으로 輸入하는 事業에 從事하는 것.

(2) 上記事業에 從事하는 者가 上記 輸入한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혹은 관계자를 통해 販賣, 販賣의 申請 또는 販賣를 하기 위한 引渡販賣契約 혹은 出荷를 行하는 것.

(b) 財務省長官이 本法에 基礎하여 發行하는 基本免許에 따르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의 事項을 行하는 것을 違法으로 한다.

(1) 蒸溜酒의 蒸溜, 와인의 釀造, 蒸溜酒 또는 와인의 精溜 또는 브랜드, 혹은 蒸溜酒의

瓶入 또는 保管 및 瓶入을 行하는 事業에 從事하는 것. 또는

(2) 上記事業에 從事하는 者가 上記 蒸溜, 釀造, 精溜, 또는 브랜드 혹은 瓶入 또는 保管 및 瓶入한 蒸溜酒 또는 와인을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혹은 關係者를 通하여 販賣, 販賣의 申請 또는 販賣를 하기 위한 引渡, 販賣契約 혹은 出荷를 行하는 것.

(c) 財務省長官이 本法에 基礎하여 發行하는 基本免許에 따르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의 事項을 行하는 것을 違法으로 한다.

(1) 都賣業으로서 再販賣하기 위하여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購入하는 事業에 從事하는 것. 또는

(2) 上記事業에 종사하는 자가 上記購入한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혹은 관계자를 통하여 販賣, 販賣의 申請 또는 販賣를 하기 위한 引渡, 販賣契約 혹은 出荷를 行하는 것.

本項은 1936年 7月 1日부터 効力を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州 또는 그의 行政上의 一部の 機關 혹은 當該機官의 官吏 또는 職員에게는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當該機關 혹은 官吏 또는 職員은 本法에 根據하는 基本免許를 取得하는 것을 義務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4 基本免許

(a) 基本免許의 發行을 認定받는 者

다음의 사람은 申請에 따라 基本免許의 發行을 認定받는 것으로 한다.

(1) 1935年 5月 25日에 聯邦政府機關이 發行한 蒸溜業者, 精溜業者, 와인釀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서의 基本免許를 保有하고 있는 者.

(2) 財務省長官이 다음의 事實을 認定하지 않

는 경우 當該申請者.

- ① 申請者(株式會社의 경우는 그의 任員, 代表理事 또는 主要株主)가 申請日로부터 5年以内に 聯邦法 또는 州法에 依한 重罪에 關한 有罪로 되어 있거나 또는 申請日로부터 3年以内に 酒類에 關한 聯邦法(酒稅에 關한 것을 包含)에 依한 輕罪에 關한 有罪로 되어 있는 것.
- ② 申請者가 그의 事業經歷, 財務狀態 또는 去來關係로부터 判斷해서 合理的 期間內에 事業을 開始하고 또는 聯邦法에 따라 事業을 行할 可能性이 없다고 보는 것.
- ③ 申請된 事業이 營業予定地의 州法에 違反하는 것.

(b) 免許의 拒絶 및 聽聞

基本 免許申請에 對한 調査에 根據하여 財務省長官이 申請者가 基本免許의 發行을 받을 資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데 足한 理由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事由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 申請者의 申立에 따라 申請者에게 聽聞의 通知 및 機會를 付與하는 것으로 한다.

聽聞의 通知 및 機會를 준 후에 財務省長官이 申請者가 本法에 基礎하여 基本免許의 發行을 받을 資格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長官은 命令書로서 命令의 基礎가 되는 認定事實을 表示하고 申請을 拒絶하는 것으로 한다.

(c) 申請書의 樣式

財務省長官은 모든 基本免許의 申請의 方法 및 樣式을 定하며(申請書에 記載하는 事項도 包含) 本法 規定에 따라 基本免許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는 權限 및 基本免許條件을 基本免許証上에 記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本法을 有効하게 執行하기 爲하여 財務省長官이 必要하다고 보는 範圍에서 財務省長官은 蒸溜酒, 와인 및 麥芽飲料 그리고 이들 各種品目에 對해

혹은 本法에 따라 免許가 주어지는 各種 免許者에 對해 個別의 申請書 및 個別의 免許를 義務지을 수 있다.

本法에 根據하여 基本免許가 發行되는 것이 合衆國에 依한 法令違反의 是定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d) 條件

不公正 競爭 및 違法事業 活動에 關한 本法 第205條 그리고 別크販賣 및 瓶入에 關하는 本法 第206條의 義務, 聯邦憲法修訂 第21條 및 그의 施行法令 그리고 蒸溜酒 와인 및 麥芽飲料에 關한 聯邦法令(酒稅에 關하는 것을 包含)을 遵守할 것을 基本免許의 條件으로 한다.

(e) 免許의 取消, 停止 및 撤回

基本免許는 聽聞의 通知 및 機會를 免許者에게 준 후 財務省長官의 命令에 依해,

(1) 免許者가 故意로 免許의 條件에 違反했다는 것을 財務省長官이 認定할 경우에는 取消되고 또는 財務省長官이 適當하다고 判斷되는 期間 停止되는 것으로 한다. 但 條件의 첫 回の 違反의 경우는 免許停止만이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2) 免許者가 2年間 以上の 期間 免許에 依해 認定되는 事業에 從事하지 않았다는 것을 財務省長官이 認定할 경우는 取消되는 것으로 한다.

(3) 免許가 詐欺 虛偽의 申請 또는 主要事實의 隱蔽에 의해 取得되었다는 것을 財務省長官이 認定했을 경우는 撤回하는 것으로 한다. 命令書에는 命令의 基礎가 되는 認定事實을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f) 命令書의 送達

申請의 拒絶, 停止, 取消, 撤回 또는 其他의 手續에 關하는 長官의 命令書는 다음의 方法에 의해 送達하는 것으로 한다.

(1) 長官으로부터 指名된 長官의 官吏 또는 職員 혹은 長官으로부터 權限을 부여받은 內

國歲入廳 또는 關稅局의 官吏에 의한 指參.

(2) 長官의 記錄上 最新의 住所의 申請者 또는 連絡人을 受取人으로 하는 內容 證明郵便.

(g) 存續期間

基本 免許는 本條의 規定에 根據하여 停止, 取消 또는 撤回되거나 또는 自主的으로 放棄될 때까지 効力을 繼續하는 것으로 한다. 但,

(1) 貸與, 賣却 또는 기타 自主的인 讓渡가 行해질 경우에는 免許는 그 時點에서 自動的으로 効力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2) 法律의 効力에 依해 讓渡되었거나 혹은 株式의 取得, 기타의 方法에 依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누구엔가에 依해 免許者에 對한 事實上 또는 法律上의 支配權이 取得될 경우는, 當該免許는 當該 事實이 發生한 날로부터 30日이 經過했을 때 自動的으로 効力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한다.

但, 當該 30日 以內에 免許讓受人 또는 免許者에 의해 新規基本, 免許의 申請이 行해질 경우는 當該基本免許는 財務省長官에 의한 當該 申請의 取扱이 確定될 때까지 効力을 繼續하는 것으로 한다.

(h) 不服申立訴訟

基本 免許申請에 對한 拒絶 또는 基本免許의 停止, 取消 혹은 撤回을 行하는 財務省長官의 處分命令에 對한 不服申立訴訟을 免許者 또는 免許申請者는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不服申立訴訟은 不服申立人의 住所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合衆國 巡回訴訟裁判所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의 合衆國訴訟裁判所에 當該處分命令書가 發付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長官命令의 一部 또는 全部 變更 또는 取消을 要求하는 書面을 提出하는 것에 依해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訴狀의 등본은 即時 裁判所書記에 의해 長官 또는 當該目的을 爲해 長官으로부터 指定된 者에게 送付되는 것으로

하고 等본의 送付를 받은 경우 長官은 聯邦法典 第28卷 第2112條에 根據하여 不服申立訴訟의 對象이 되는 處分命令의 基礎가 되는 記錄을 裁判所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不服申立訴訟에 關하여 控訴裁判所는 處分命令을 是認, 變更 또는 取消하는 排他的 管轄權을 갖는 것으로 한다.

長官에 對해 處分命令에 對한 異議申立이 適法하게 行해져 있으나, 또는 異議申立을 行할 수 없었던 일에 對해 合理的 理由가 存在하느냐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裁判所는 長官의 處分命令에 對한 異議申立의 審議를 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實質的 證據에 依해 根據되어 있을 경우는 長官의 認定事實은 確定的인 것으로 한다. 不服申立訴訟의 當事者가 追加證據의 提出을 裁判所에 申請하고 財務省에 있어서의 手續에서는 當該證據를 提出할 수 없었던 것에 對해 合理的 理由가 있을 경우는 裁判所는 當該追加證據를 財務部長官에 送付하여 裁判所가 適當하다고 判斷하는 方法에 따라 期日에 있어서, 더우기 條件下에서 聽聞手續에 依해 財務省이 審査할 것을 命할 수가 있다.

財務省長官은 當該手續에 따라 수집되는 追加證據에 依해 自己의 事實認定을 變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長官은 當該 變更된 事實認定 또는 새로운 事實認定을 裁判所에 提出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 事實認定은 實質的 證據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는 確定的인 것으로 한다.

事實認定의 變更에 따라 原處分命令의 變更 또는 取消에 關해 財務省長官이 原案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長官은 이를 裁判所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長官의 處分命令에 對한 控訴裁判所의 是認 變更 또는 取消判決 또는 決定은 確定的인 것으로 하고 聯邦法典 第28卷 第346條 및 第347條에서 規定하는 移送命令에 基礎

하는 合衆國最高 裁判所의 再審에만 따르는 것으로 한다.

本項에 根據하는 不服申立訴訟의 開始는 裁判所에 依한 相異한 命令이 行해지는 경우를 除外하고 財務省長官의 處分命令의 執行을 停止시키는 것으로 한다.

(i) 處分手續開始의 期限

聯邦法 遵守에 關한 免許條件 違反을 事由로 하는 基本免許의 停止 또는 取消의 手續은 聯邦法 違反의 有罪가 確定된 후 18個月 以後에 또는 有罪의 確定이 없는 경우에는 違反行爲가 있었던 후 3年 以後에 着手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聯邦法 違反에 關하여 和議(Compromise)를 行할 權限을 付與받고 있는 政府官吏에 의해 和議가 行해질 경우는 基本免許는 免許條件 違反을 事由로 하여 停止 또는 取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5 不公正 競爭 및 違法事業活動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蒸溜業者 精溜業者 브랜다業者 또는 其他의 加工業者로서 또는 輸入業者, 都賣業者로서 혹은 蒸溜酒의 瓶入業者, 倉庫業者 및 瓶入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者가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혹은 關係者를 通하여 다음의 行爲를 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a) 自社製品의 排他的購入의 要求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 州際 또는 國際 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販賣하고 있는 또한 販賣의 申請을 行하고 있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排除하고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販賣에 從事하고 있는 小賣業者가 當該業者로부터 當該製品을 購入할 것을 契約 또는 其他의 方法에 依해 要求하는 것.

(1) 當該 要求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行해지는 경우.

(2) 當該業者가 當該製品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當該製品의 去來를 實質적으로 制限하거나 또는 阻止할 程度로 要求行爲를 하는 경우.

(3) 當該 要求行爲의 直接效果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當該 製品을 當該 小賣業者에게 販賣 또는 販賣申請을 하는 것을 阻止, 妨害, 防止 또는 制限하게 되는 경우.

(b) 特約酒販店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 다음의 手段의 어떠한 것에 依해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販賣에 小賣業者가 當該業者로부터 當該 製品을 購入할 것을 勸誘하여 州際 또는 國際 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販賣하거나 또는 販賣의 申請을 行하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全面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排除하는 것. (경우)

(1) 勸誘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行해질 경우.

(2) 當該業者가 當該製品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當該製品의 去來를 實質적으로 制限하거나 또는 阻止할 程度로 勸誘行爲를 하는 경우 또는,

(3) 當該勸誘行爲의 直接效果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當該製品을 當該小賣業者에 販賣의 申請을 하는 것을 阻止, 妨害, 防止 또는 制限하는 것일 경우.

(手段)

(1) 小賣業者의 免許에 對해 權利를 取得하거나 또는 保有하는 것.

(2) 小賣業에 關해 小賣業者의 所有, 占有 또는 使用하는 不動產 또는 動產에 對한 權利를 取得하는 것.

(3) 小賣業者에 對해 設備, 備品, 標識, 供給品, 金錢, 役務 또는 其他의 有價物을 提供, 供與, 賃貸, 貸與 또는 販賣하는 것. 但, 國民 保健, 關係物品의 數量 및 價格, 公共의 利益

에 反하지 않는 確立된 去來慣行 그리고 本項의 目的에 對해 正當한 考慮를 하고 財務省長官이 規制에 依해 定하는 例外的 規定의 適用을 받는 경우를 除外한다.

(4) 宣傳活動, 展示, 또는 配送서비스에 關해 小賣業者를 爲한 支拂 또는 與信을 行하는 것.

(5) 小賣業者의 借入金 또는 金錢債務의 保證을 行하는 것.

(6) 財務省長官이 確認하고 規則으로 定하는 當該業界에 있어서의 經常的, 慣行的 어음 去來 期間을 넘어서 또는 回收期間을 小賣業者를 爲해 設定하는 것.

(7) 小賣業者가 當該製品의 一定割引을 받아 處分을 行하는 것을 義務지우는 것.

#### (c) 商事買收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 다음의 어떠한 手段에 依해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販賣에 從事하는 業務上의 구입人에 對해 當該 製品을 當該業者로부터 購入할 것을 勸誘하고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第三者에 依해 販賣되거나 또는 販賣의 申請을 하고 있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全面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排除하는 것.

(1) 當該勸誘行爲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行해지는 경우.

(2) 當該業者가 當該製品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當該製品의 去來를 實質적으로 制限하고 또는 阻止하는 程度의 勸誘行爲를 行하는 경우.

(3) 當該勸誘行爲의 直接效果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當該製品을 當該小賣業者에게 販賣 또는 販賣의 申請을 하는 것을 阻止, 妨害, 防止 또는 制限하는 것일 경우, 여기에서,

- ① 商事贈賄를 行하는 것 또는,
- ② 業務上의 購買人의 役員, 使用人 또는 代

理人에게 보너스, 프리미엄 또는 報酬의 支拂을 約束 또는 提供하는 것.

#### (d) 委託販賣

委託販賣 契約에 依한 경우 또는 返品の 權利를 認定하고 있거나 眞正한 賣買以外の 條件을 認定하고 있는 條件付 賣買契約에 依한 경우 혹은 去來의 一部分가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當該業者에 依한 業務上의 購買人으로 부터의 其他의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購入 또는 購入의 合意에 關連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販賣에 從事하는 業務上의 購買人에 對하여 當該製品의 販賣, 販賣의 申請, 또는 販賣 契約을 行하는 것. 혹은 當該 業務上의 購買人이 當該製品의 購入, 購入의 申請 또는 購入契約을 行하는 것.

(1) 當該販賣, 購入, 申請 또는 契約이 州際 또는 國際去來의 過程에서 行해질 경우.

(2) 當該業者 또는 業務上 購買人이 當該製品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를 實質적으로 制限하고 또는 阻止할 程度로 當該諸 行爲를 行할 경우.

(3) 當該販賣, 購入, 申請 또는 契約의 直接效果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第三者가 當該製品을 當該業務上의 購買人에게 販賣 또는 販賣의 申請을 하는 것을 阻止, 妨害, 防止 또는 制限하는 경우. 但, 本項의 規定은 商品이 販賣된 後에 發生하는 通常의 商業上의 事由에 依해 行해지는 眞正한 商品의 返品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 라베링

包裝, 商號, 品銘 및 라벨 그리고 規格 및 容量에 關하여 財務省長官이 定하는 다음의 各規則에 違反하여 瓶入, 包裝 및 商標가 붙어 있는 製品의 瓶入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販賣 또는 出荷하거나 販賣 또는 出荷를 爲한 引渡를 하거나 또

는 其他의 導入, 혹은 受取 또는 消費를 爲한 關稅倉庫로부터의 引出行爲.

(1) 當該製品 또는 數量에 關하여 消費者를 欺瞞하는 것을 禁止하고 虛僞든 아니든 간에 財務省長官이 消費者를 誤解시킬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하는 貯藏年數, 製法, 分析內容, 保證事項 및 科學的 또는 無關連의 事項에 對하여 記述을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2) 製品의 特性 및 品質, 製品의 알콜度數, 容量 및 製品의 製造業者, 瓶入業者 또는 輸入業者에 關하여 消費者에게 適切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한 規則.

(3) 브랜드 또는 精溜에 依해 生産되는 蒸溜酒의 경우 中性알콜이 使用될 때는 使用되는 中性알콜의 度數 및 當該 中性 알콜의 原料名을, 또는 連續蒸溜 方法에 依해 製造되는 中性알콜 또는 GIN의 경우는 原料名을 消費者에게 正確히 알려주기 위한 記述을 義務 지우는 規則.

(4) 라벨上에 競爭者의 製品을 誹謗하거나 또는 虛僞, 誤解, 卑猥, 혹은 低俗한 記述을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5) 名稱 또는 表象의 使用이 當該個人 또는 團體에 依해 當該製品이 保證, 製造 또는 使用되고 혹은 이들을 爲해 이들의 監督 또는 이들의 仕樣에 根據하여 生産되는 것이라는 것을 消費者에게 誤解시킬 可能性 있을 경우에는 生存하고 있는 著名한 個人의 氏, 名, 現存하는 私的 또는 公的 團體의 名稱, 이들의 氏名 또는 名稱을 模倣 또는 略號化 한것을 商號 또는 브랜드 名으로 해서 使用하여 消費者를 欺罔하는 것을 禁止하고 또는 當該個人 또는 團體의 圖示化 또는 記章化한 表象을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但, 本 條項의 規定은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蒸溜業者, 釀造業者, 精溜業者, 브랜드業者 또는 其他의 加工業者로서 혹은 輸入業

者, 都賣業者, 小賣業者, 瓶入業者 또는 倉庫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者의 名稱의 使用, 혹은 1935年 8月 19日 以前의 權利에 따라 當該業者 또는 當該業者의 被繼承者에 依해 使用되고 있는 商號 또는 브랜드 名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關稅倉庫로부터의 引出時에 製品의 原產地, 貯藏年數 및 特性에 關해 外國政府가 發行하는 證明書의 提出을 義務化시키는 規則을 包含한다)

本 條項의 規定 또는 聯邦政府 各省廳의 決定, 規定 또는 規則은 合衆國 特許庁에 現在 有効하게 登錄되어 있지 않다. 外國原産의 商號 브랜드名의 使用으로 적어도 過去5年間 合衆國에 있어서 當該 使用者 또는 그 被繼承者에 依해 使用되어 왔던 것이거나 當該商號 또는 브랜드名의 使用이 製品의 生産되는 合衆國內의 位置의 地名에 依해 正當化되는 것이거나, 當該商號 또는 브랜드名이 라벨上 또는 宣傳活動上 使用되는 경우 使用이 正當하다는 것이 商號 또는 브랜드名과 同等하게 明白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使用할 權利를 否定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聯邦法으로 認定되는 경우 혹은 本項 또는 州法上의 義務를 遵守할 目的을 爲하여 라벨을 바꿔서 붙이는 것을 認定하는 財務省 規則에 따르는 경우를 除外하고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혹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出荷를 한 後에 販賣를 爲하여 保有하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上의 商號, 브랜드 또는 라벨을 變更, 毀損, 破損 消去 또는 除去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本 項에서 規定하는 의무에 違反하여 瓶入, 包裝 또는 라벨링된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販賣, 出荷 또는 이들의 導入을 阻止하기 爲해 財務省長官이 本項의 施行日로 定한 날 以後 財務省長官에 對한 申請에 根據하여 長官이 規則에



依해 定하는 方式 및 樣式에 따라 發行하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에 關한 라벨承認 證書를 取得하고 이를 保有하지 않고,

(1) 蒸溜酒의 瓶入業者, 와인의 釀造業者, 브랜드業者 또는 都賣業者, 와인 保稅倉庫의 所有者 및 麥芽飲料의 釀造業者 또는 都賣業者가 瓶入을 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2) 어느 누구도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販賣 또는 其他 商業目的을 爲하여 瓶入 形態로 保稅倉庫로부터 引出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蒸溜酒의 瓶入業者, 와인의 釀造業者, 브랜드業者 또는 都賣業者, 와인 保稅倉庫의 所有者 혹은 麥芽飲料의 釀造業者 또는 都賣業者가 長官에 對한 申請에 根據하여 申請者에 依하여 瓶入되는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가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販賣, 販賣의 申請, 船積, 出荷를 爲한 引渡 또는 其他 이들 去來에 있어 導入이 되지 않는다는 事由를 長官에게 表示하고 長官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에는 本項에 따르는 義務를 免除하는 것으로 한다.

內國歲入庁의 官吏는 上記證書의 取得이 行해지지 않았거나 瓶入을 하는 者의 免除의 申請에 對해 長官으로부터 承認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瓶入場으로부터 蒸溜酒를 搬出하는 것을 停止시킬 權限이 주어지며 이를 行할 것을 義務지워 지는 것으로 한다.

關稅局官吏는 上記證書가 取得되어 있지 않을 경우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保稅倉庫로부터 搬出하는 것을 停止시킬 權限이 주어지며 이를 行할 것을 義務지워지는 것으로 한다.

合衆國 地方裁判所 및 合衆國准裁判所는 本項에 根據하는 申請에 대한 財務省長官의 最終的 處分을 全面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停止, 取消시키기 위한 告訴에 關해 管轄權을 갖는

것으로 한다.

#### (f) 宣傳活動

當該 宣傳活動이 財務省長官에 依해 定해지는 다음 規則에 違反하여 行해지는 경우로서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宣傳을 라디오放送에 依해 또는 新聞, 定期 其他의 出版物에 있어 혹은 標識, 戶外 宣傳機器 또는 印刷物에 依해 廣告 또는 流布하거나 혹은 廣告 또는 流布시키는 것.

但, 當該宣傳活動이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것이거나 또는 當該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 販賣를 促進하는 것일때, 혹은 郵便에 依한 流布를 行하는 것일때

(1) 宣傳되는 製品에 關하여 消費者를 欺罔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그리고 虛偽든 아니든 關係없이 貯藏年數, 製造方法, 分析內容, 保証內容 및 科學的 또는 無關係한 事項에 關해 財務省長官이 消費者를 誤解시킬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하는 表現을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2) 消費者에 對해 宣傳에 依한 製品의 特性 및 品質 製品의 알콜度數 및 宣傳責任者에 關適切한 情報를 提供할 것을 義務지우는 規則.

(3) 브랜드 또는 精溜에 依해 製造되는 蒸溜酒의 경우로서 製造에 中性알콜이 使用될 때는 使用되는 中性알콜의 度數 및 中性알콜의 原料名을, 혹은 連續蒸溜方式에 依해 製造되는 中性알콜 또는 GIN의 경우는 그 原料名을 消費者에게 正確하게 알리기 위한 表現을 義務지우는 規則.

(4) 競爭者의 製品을 誹謗하는 혹은 虛偽, 誤解, 卑猥 또는 低俗한 表現을 禁止하는 規則.

(5) 宣傳되는 製品의 라벨上의 記述과 다른 表現을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則.

本項의 規則은, 그後 移動, 改修 또는 改良되는 것을 除外하고 1935年 6月 18日 現在 設置되어 있는 戶外宣傳機器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項의 禁止規定 및 本項에 基礎하는 規則은 出版者 또는 라디오放送會社가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혹은 關係者를 통해 蒸溜業者, 釀造業者, 精溜業者 또는 其他의 加工業者,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의 輸入業者 또는 都賣業者, 蒸溜酒의 瓶入業者 또는 倉庫業者 및 瓶入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新聞 또는 定期刊物物, 其他의 出版社 또는 라디오 放送會社에 適用하지 않는다.

本條의 (a)(b) 및 (c)項의 規定은 州 및 그 行政上의 一部分의 機關 혹은 當該機關의 官吏 또는 職員에 依해 行해지는 行爲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麥芽飲料에 關해서는 本條 (a)(b)(c) 및 (d)項의 規定은 州法이 州內의 小賣業者 또는 業務上 購買人과 州內의 麥芽飲料의 釀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都賣業者와의 類似한 去來에 關하여 類似한 義務를 지우고 있는 範圍內에서, 이들 어느 州의 小賣業者 또는 業務上의 購買人과 當該 以外의 麥芽飲料의 釀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都買業者와의 사이의 去來에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

麥芽飲料의 경우 本條의 本項 및 (e)의 項의 規定은, 州法이, 州外로부터 州內에 販賣 또는 出荷되거나, 出荷를 爲하여 引渡되거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導入되어 受取되는 麥芽飲料의 라벨링 또는 宣傳活動에 對해 類似한 義務를 지우고 있는 範圍內에서, 州外로부터 州內에 販賣 또는 出荷되거나, 出荷를 爲하여 引渡되거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導入되어 受取되는 麥芽飲料의 라벨링 그리고 州外로부터 州內에 販賣 또는 出荷, 出荷를 爲한 引渡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導入되어 受取할 것을 豫定하고 있는 麥芽飲料의 宣傳活動에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

財務省長官은 本條의 規定을 施行하는 規則

을 定할 경우에는 適切한 公告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利害關係人에게 聽聞의 機會를 주는 것으로 한다.

## §. 206 벌크販賣 및 瓶入

### (a) 違反行爲

다음의 行爲를 行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1) 財務省長官의 爲하는 規則에 따라 輸出하기 爲해 또는 다음에 規定하는 者에 對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蒸溜酒를 벌크로 販賣하거나 販賣의 申請, 販賣契約의 締結 또는 其他의 處分을 行하는 것. 혹은 다음에 規定하는 者에 對해 販賣하기 爲하여 또는 當該者에게 使用되기 爲하여 上記 規則에 따라 輸入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蒸溜酒를 벌크로 輸入하는 것.

### (者)

蒸溜業者, 蒸溜酒의 精溜業者, 內國歲入法에 根據하는 保稅倉庫 또는 關稅法에 根據하는 第8級 保稅倉庫를 經營하는 者, 強化 와인의 製造業者, 工業用알콜 設備의 所有者, 혹은 合衆國, 州 또는 그의 行政上의 一部分의 機關.

(2) 引渡前에 法令에 따라 라벨링 및 商號를 붙인 瓶에 蒸溜酒를 包裝하는 것을 倉庫 証券上 義務지워져 있거나 蒸溜酒의 벌크에 依한 引渡가 蒸溜酒를 벌크로 販賣하고 또는 處分하는 것을 法令上 認定받고 있는 者에 對해서 만 行해지는 경우를 除外하고 倉庫業者가 벌크蒸溜酒의 倉庫証券을, 販賣, 販賣의 申請, 販賣의 契約締結 또는 其他의 處分을 行하는 것.

(3) 蒸溜酒를 販賣 또는 其他의 處分을 行하는 것을 法令上 認定받지 않은 者가 蒸溜酒의 瓶入을 行하는 것.

### (b) 刑罰

本條의 義務에 違反하는 者는, 그의 有罪確定에 따라 5000달러 以下의 罰金 또는 1년 以下의 投獄, 혹은 그의 雙方에 依해 處罰하는

것으로 하고 違反行爲에 關한 蒸溜酒 및 그 容器는 合衆國에 의해 沒收하는 것으로 한다.

(c) “벌크로”

“벌크로”라는 것은 “1 와인 갈론을 넘는 容量을 갖는 容器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 207 刑罰, 裁判所管轄, 和議

違反行爲가 行해진 地域, 또는 그 虞慮가 있는 地域, 違反者의 住所地 또는 違反者가 主된 事務所를 所有하고 있는 地域을 管轄하는 合衆國地方 裁判所 및 合衆國 准州裁判所는, 本法의 規定 어느것에 違反하는 行爲를 阻止 및 制限하기 爲해 合衆國의 이름으로 檢事總長이 行하는 訴에 의해 管轄權을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本法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輕罪로 하고 그의 有罪確定에 따라 1000달러 以下の 罰金에 處하는 것으로 한다. 財務省長官은 本法의 어느 것인가의 規定에 對한 違反行爲에 關하여,

(1) 各 違反行爲에 對해 長官에 의해 徵收되어 雜收入으로서 收納되는 500달러를 넘지 않는 金額의 納付를 받고, 나아가

(2) 違反行爲가 反復되는 경우에는 刑事手續의 重複을 回避하기 爲해 合衆國은 5日間 通知에 따라 自主적으로, 違反行爲의 反復을 阻止하는 命令을 裁判所에 發할수 있다는 趣旨의 約定을 締結함으로서, 違反行爲에 關해 發生하는 刑事責任에 對하여 和議를 行할 權限을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 208 兼任 代表理事

(a) 違反行爲

本條의 (b)項에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1935年 8月 29日 以後에 있어 어떤 個人이 어떤 會社의 任員 또는 代表理事의 職에 就任하

는 것.

但, 當該職에의 就任이 當該個人을,

(1) 蒸溜酒의 蒸溜業者, 精溜業者 또는 BLENDER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는 複數의 會社.

(2) 當該會社와 蒸溜酒의 蒸溜業者, 精溜業者 또는 BLENDER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는 當該會社의 關連會社

(3) 蒸溜酒의 蒸溜業者, 精溜業者 또는 BLENDER業者로서 事業에 從事하는 當該會社의 複數의 關連會社의 任員 또는 代表理事로 任命하게 되는 경우로서 當該職에 就任前에 財務省長官에게 當該個人으로부터 申請이 行해지고 當該個人이 任員 또는 代表理事로 되어 있는 上記 모든 會社의 任員 또는 代表理事로서의 職務와 申請을 行하는 會社에 있어서의 職務를 兼任하는 것이 蒸溜酒의 州際 또는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 또는 阻止하는 것이 아닌것을 財務省長官에게 報告하고 承認을 받지 않았을 때, 財務省長官은 提出된 證據 資料 및 自己의 認定事實에 根據하여 當該申請을 命令에 의해 承認 또는 拒絕하는 것으로 한다.

合衆國 地方裁判所 및 合衆國 准州裁判所는 本項에 따르는 申請에 대한 長官의 最終 處分の 全面的 또는 部分的 禁止 및 取消 또는 停止를 要求하는 訴에 關하여 管轄權을 갖는 것으로 한다.

(b) 法律上 認定되는 任員 또는 代表理事職에의 就任條件.

當該會社가 就任의 時點에서 關連會社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當該會社의 任員 또는 代表理事의 地位를 保有하고 있는 동안 (a)項에서 規定하는 會社의 任員 또는 代表理事의 職에의 就任은 (a)項의 規定에 關係없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 當該會社가 1935年 8月 29日에 있어 關連會社인 경우.

(2) 州内에서 事業을 行하는 條件으로 州法에 根據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것을 義務지우고 있는 州法에 따라 當該會社가 設立되어 있을 경우.

(3) 當該 各 會社中 1社 以上の 會社가, 州内에서 事業을 行하는 條件으로 州法에 根據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것을 義務지우고 있는 州法에 따라 設立되어 있고 나아가 當該 會社의 其他의 會社가 1935年 8月 29日에 있어 存在하고 있을 경우.

(4) 當該 會社中 1個社 以上の 會社가 州内에서 事業을 行하는 條件으로 州法에 根據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것을 義務지우고 있는 州法에 따라 設立되어 있고 나아가 當該 各 會社의 一個社를 넘지않는 會社가 이와 같이 設立된 會社가 아니고 또한 1935年 8月 29日 以後에 設立 되어 있을 경우.

(c) 會社

本項上 “會社”라는 것은 株式會社, Joint-Stock-Company, Business-Trust 또는 Association을 뜻하고, 州 또는 그의 行政上의 部分의 機關 혹은 當該機關의 官吏 또는 職員을 包含하지 않는다.

(d) 刑罰

本條에 違反하여 職에 就任하는 個人은 1000 弗 以下の 罰金으로 處罰하는 것으로 한다.

## §. 209 雜 則

(a) 定義

本法에 있어서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合衆國이란 各州, 准州 및 콜롬비아 特別區를 말하는 것이며 “州”란 准州 및 콜롬비아 特別區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准州”란 아라스카, 하와이 및 프예트리코를 말하는 것이다.

(2) “州際 또는 國際去來”란 어떠한 州와 當該州 以外の 地域間의 去來, 准州 또는 콜롬

비아 特別區内の 去來, 혹은 州外의 地域을 使用하는 同一州内の 去來를 뜻하는 것으로 한다.

(3) “者”라는 個人, Partnership-Joint-Stock-Company Business-Trust, Association, 株式會社 또는 其他의 形態의 企業을 뜻하는 것으로 하고 管理人, 受託者 또는 請算機關 그리고 州 또는 그의 行政上의 部分의 官吏 또는 職員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業務上 購買付란 都賣人 또는 小賣人인 者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4) “關係者”란 2名 以上の 者中 1名이 株式의 所有 其他에 依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當該 2名 以上の 또는 其他의 者의 法律上 혹은 事實上의 支配를 行하고 있을 때에 있어 當該 2名 以上の 者中 1名을 말하는 것이다.

(5) “蒸溜酒”란 非工業用의 使用을 爲한 에칠알콜, 水酸化에칠, 와인蒸溜酒, 위스키, 럼, 브랜디, 진, 및 기타의 蒸溜酒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의 稀釋物 및 混合物을 包含한다.

(6) “와인”이란 ①現行의 또는 그後 改正되는 1918年 歲入法 第610條 및 第617條에 定義하는 와인 및 ②同規定上 와인으로 定義되어 있지는 않지만 와인의 製法에 依해 釀造되는 其他의 飲料를 뜻하는 것으로 하고 스파클와인, 炭酸가스 와인, 濃縮된 포도액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와인, 成熟포도果汁 以外の 農産物로 만들어지는 와인, Imitation와인, 와인으로서 販賣되는 合成品, Vermouth, 사과酒, 배酒, 淸酒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어떠한 品目에 있어서도 알콜濃度의 容量率로 7%以上 24%以下로 하고 工業用의 것을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麥芽飲料”란 發芽大麥 및 호프의 飲用 釀造水를 다리거나 끓여서 만든 것 혹은 그 双方에 依한 알콜醱酵物에 依해 만들어지는 飲料 또는 그 一部 또는 製品을 뜻하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發芽穀物, 非發芽 또는 調整穀物, 穀物

로부터 만들어지는 炭化水素 또는 기타의 產品 二酸化炭素 및 其他 人間의 食用에 適合한 健全한 物質의 添加의 有無를 묻지 않는다.

(8) “瓶”이란 蒸溜酒, 와인 또는 麥芽飲料를 小賣販賣하는 경우에 使用하는 用器을 뜻하는 것으로 하고 그의 素材를 묻지 않는다.

(b) 改正 또는 廢止 權限

本法의 各 規定을 改正 또는 廢止하는 權限

은 여기에 明示的으로 留保되는 것으로 한다.

(c) 各 規定의 獨立性

本法의 어떠한 規定 혹은 同規定의 누군가 또는 어떠한 狀況에의 適用이 無効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本法의 其他의 規定 혹은 當該 規定의 無効로 되는 者, 또는 狀況 以外의 者 또는 狀況에의 適用은 이로 因해 影響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나라사랑 따로없다 간헐신고 나라사랑